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후속 조치로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며,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소·연락처 등을 신규 연계하여 위기의심가구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 1) 경제적 위기징후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위기도를 정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기에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함

나.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을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을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등을 가진”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으로, “장기요양자”를 “장기요양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2) 및 3) 중 “부상·정신질환”을 각각 “부상·질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카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정용 또는 겸업용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정보
- 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정용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정보
- 카.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 기재한 연락처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원의 전화번호
- 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에 관한 정보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원의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
- 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된 사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사실조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중인 주소에 관한 정보 및 전화번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	-----
다.	--.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	1. -----
터 <u>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u>	-- <u>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u>
<u>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u>	<u>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u>
<u>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u>	<u>이상 2천만원 -----</u>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	2. -----
터 <u>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u>	-- <u>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u>
<u>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u>	<u>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u>
<u>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u>	<u>0만원 이상 2천만원 -----</u>
<u>우</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